

#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29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1. 11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# 1. 제안이유

2021년도 기준인건비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수요 정원 반영을 위한 조정과 현장 중심의 인력 배치를 위해 자치법규를 개정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#### 가. 기구 조정 현황

현 행	개 편	비 고
본청 2국 1실 15과(87담당)	본청 2국 1실 15과(89담당)	+2담당
직속기관 5과(29담당)	직속기관 5과(29담당)	-
1사업소(4담당)	2사업소(4담당)	+1사업소
의회(1담당)	의회(1담당)	-
8읍면 1출장소(38담당)	8읍면 1출장소(38담당)	-

#### 나. 사업소·담당 신설, 폐지 및 분장사무 대강 조정(안 제12조, 14조, 16조)

구 분	부 서	비 고
사업소 신설	농기계임대사업소	+1
담당 신설	건설과(건설기술관리담당) 올림픽유산과(청소년올림픽담당) 유통산업과(농촌협약담당)	+3
담당 폐지	기술지원과(농업기계담당)	△1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불임(관계법령 발취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- 1) 입법예고(2021.10.22.~11.01) : 특기할 사항 없음
- 2) 규제심사 : 비규제
- 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- 4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

##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호 중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바. 농촌협약에 관한 업무

제12조제3호 중 라목을 삭제하며,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바목까지로 한다.

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4조(설치) ① 법 제114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.

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.

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6조(소관사무)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.

### 1. 상하수도사업소

가. 상·하수도관련 기본계획 및 재정비 계획 수립·시행

나. 상·하수도시설, 분뇨처리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

다. 상·하수도 특별회계 및 공기업 운영

라. 상·하수도 사용료 부과·징수

마.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원지 관리

바. 상·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

사. 지하수에 관한 업무

아. 그 밖에 상·하수도, 분뇨처리와 관련된 사항

## 2. 농기계임대사업소

가. 농기계 관련 기본계획 수립·시행

나.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및 유지관리

다. 임대농기계 사용 부과·징수

라. 영농기계화 기술보급 및 교육

마. 신기술 농기계 보급

바. 그 밖에 농기계와 관련된 사항

제20조제2항 중 “별표 2”를 “별표 3”으로 한다.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하고,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2조(소관사무) <u>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.</u>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유통산업과 가. ~ 마. (생 략) 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3. 기술지원과 가. ~ 다. (생 략) <u>라. 영농기계화 개발에 관한 업무</u> <u>마. ~ 사. (생 략)</u></p>	<p>제12조(소관사무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(현행과 같음) 가. ~ 마. (현행과 같음) 바. 농촌협약에 관한 업무</p> <p>3. (현행과 같음) 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 <u>&lt;삭 제&gt;</u> 라. ~ 바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4조(설치) ① <u>법 제114조에 따라 상·하수도, 분뇨처리장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군에 상하수도사업소(이하 “사업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</u></p> <p>② <u>사업소의 위치는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후평길 74에 둔다.</u></p>	<p>제14조(설치) ① 법 제114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.</p>
<p>제16조(소관사무) <u>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.</u></p> <p>1. <u>상·하수도관련 기본계획 및 재정비 계획 수립·시행</u></p>	<p>제16조(소관사무)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상하수도사업소 가. 상·하수도관련 기본계획 및</p>

2. 상·하수도시설, 분뇨처리시설  
확충 및 유지관리

3. 상·하수도 특별회계 및 공기업 운영

4. 상·하수도 사용료 부과·징수

5.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원지 관리

6. 상·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운영  
및 관리

7. 지하수에 관한 업무

8. 그 밖에 상·하수도, 분뇨처리  
와 관련된 사항

<신 설>

제20조(설치) ① (생 략)

② 출장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 
별표 2와 같다.

재정비 계획 수립·시행

나. 상·하수도시설, 분뇨처리시  
설 확충 및 유지관리

다. 상·하수도 특별회계 및 공기업 운영

라. 상·하수도 사용료 부과·징수

마.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원지 관리

바. 상·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운  
영 및 관리

사. 지하수에 관한 업무

아. 그 밖에 상·하수도, 분뇨처  
리와 관련된 사항

2. 농기계임대사업소

가. 농기계 관련 기본계획 수립·시행  
나.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및  
유지관리

다. 임대농기계 사용 부과·징수

라. 영농기계화 기술보급 및 교육

마. 신기술 농기계 보급

바. 그 밖에 농기계와 관련된 사항

제20조(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별표 3-----.

[별표 2]

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(제14조 관련)

사업소명	위치
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	평창군 평창읍 후평길 74
평창군 농기계임대사업소	평창군 평창읍 여만길 46

[별표 3]

출장소 위치 및 관할구역(제20조 관련)

출장소명	위 치	관할구역
방림면 계촌출장소	평창군 방림면 계촌길 101	방림면 계촌1,2,3,4,5,6리 운교리 1,2,3리 일원

# 관계 법령 발췌

## □ 지방자치법

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~⑥ (생략)

## 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13조(시·군·구의 기구설치기준) ① 시·군·구 본청의 실·국이나 과·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·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시·군·구 본청에 두는 실·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
② 시·군·구 본청의 실장·국장과 과장·담당관의 직급과 실·과·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③ (생략)

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실·국과 실·과·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·도와 시·군·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

제20조(사업소, 출장소, 사업본부 및 지역본부 등) ① 사업소와 출장소의 조직과 공무원의 직급은 지방자치단체간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.

② 사업소는 5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,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소를 중복하여 설치할 수 없다.

③ 사업소와 출장소의 장과 그 보조·보좌기관의 직급,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④~⑤ (생략)

⑥ 지역본부·사업본부·사업소와 출장소의 장과 그 보조·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은 별표 6과 같다. 다만, 출장소 중 경제자유구역청(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행정기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장과 보조·보좌기관의 직급은 당해 시·도의 규칙으로 정한다.

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

- 비용발생 요인 없음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

## 3. 미첨부 사유

- 본 의안의 시행으로 추가 발생하는 비용이 없음.

## 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행정과장 김진용
연락처	(033) 330 - 2210